

노동조합 가입 확대...부당노동행위 엄정 대응

1. 보직 국장·부장도 조합원 자격 유지된다 규약 개정, 조합 탈퇴 중용행위 강력 대처

전국언론노조 MBC본부(이하 조합)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사실상 전 사원으로 확대됐다. 조합은 어제(28일) 제 12기 서울지부 1차 정기 대의원회를 열어 ‘조합원의 범위’를 규정한 서울지부 운영 규약(8조)을 개정했다. 개정 규약에 따르면 본사 전 사원(계약직 포함)은 원칙적으로 조합 가입과 그에 따른 권리 행사 등에 전혀 제약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노무 업무 담당자 ▲경비·비상 계획 업무자에 한해, 조합원 자격은 유지하되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등이 일시 유예된다.

보직자 자동탈퇴 규정 삭제

이번 규약 개정에 따라 보직관리자 등에 대해 적용됐던 종전의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은 삭제됐다. 따라서 앞으로는 보직 발령을 받거나 노무 업무 부서로 전보되는 조합 소속 사원도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유지한다.

조합은 지난 2014년 11월 이른바 ‘보직자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을 운영 규약에 신설했다. 당시는 사측은 조합원들에게 보직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중용하는 부당노동행위와 조합 탄압이 광범위하게 자행했다. 당시 조합은 조합원들의 보직 진출 기회를 막지 않고 회사의 업무 역량을 유지하기 위해 ‘자동 탈퇴’ 규정을 신설했다.

그러나 조합원 보호를 위해 만든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은 오히려 회사의 명백한 불법행위를 묵과하고 강력한 대응을 원천 차단한 측면을 갖고 있었다. 이후에도 사측은 보직자 뿐 아니라 현업에서 배제된 기자나 PD 직군 사원들에게도 ‘현업 복귀 발령’을 미끼로 조합 탈퇴를 요구하는 불법 행위를 노골적으로 자행해왔다. 이같은 행위는 노동조합법 81조 위반으로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행위이다.

조합은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의 삭제를 계기로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조합 탄압에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우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사례 수집에 돌입했다. 신고된 내용은 법적 검토를 거쳐, 회사는 물론 불법 행위 당사자인 간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도 형사 고발할 방침이다.

조합은 이와 별도로 공정방송 복원과 교섭력 강화 등을 위해 조합원 수를 확대하는 사업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존 탈퇴 조합원에 대한 재가입과 2012년 파업 이후 입사한 경력사원들에 대해서도 조합 가입을 적극 독려할 계획이다.

2. ‘보직 미끼’ 조합탈퇴 중용에 법적 대응

조합, 부당노동행위 사례 무더기 접수 ‘불법 행위’ 신고센터 가동

노동조합과 조합원을 탄압하는 MBC 경영진의 각종 부당노동행위가 극악(極惡)으로 치닫고 있다. 최근 두드러진 것은 불법적인 ‘조합 탈퇴 중용’이다. 조합원들에게 보직을 제안하면서 사측이 노동조합 탈퇴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조합 탈퇴 중용은 그 자체로 중대한 불법 행위이다. 조합이 개정 이전 운영 규약에서 ‘보직자 자동 탈퇴’ 규정을 시행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은 “자동 탈퇴 이전에 조합에 탈퇴서를 제출하라”며 충성 서약을 강요하고 있다.

조합에 제보된 바에 따르면, 이달 초 한 국장급 보직자는 A부장에게 “신임 보직자니까 노동조합을 탈퇴해야 해야 한다”고 중용했다. 조합원인 A부장이 “자동탈퇴 규정이 있는데 굳이 그럴 이유가 있느냐”고 여러 차례 반문했으나, 해당 국장은 집요하게 탈퇴서 제출을 요구했다.

또 다른 조합원인 B부장 역시 보직부장에 임명된 뒤, 수차례에 걸쳐 조합 자진 탈퇴를 요구받았고 결국 탈퇴서를 제출했다. 이밖에도 유사한 불법 탈퇴 중용 사례가 계속 노동조합에 접수되고 있다.

조합탈퇴 중용, 2년 이하 징역 불법 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81조에 따르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할 것 또는 탈퇴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하는 것”, “노동조합 조직이나 운영 등의 행위에 대하여 지배하거나 개입하려는 일체의 행위” 모두 부당 노동행위이며 법적 처벌을 받도록 돼있다.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노동조합 규약과 무관하게, 사용자 측이 조합원에게 노동조합 탈퇴를 요구하거나 중용하는 것은 무조건 불법이란 뜻이다.

관련자 진술과 증언 등 잇따른 ‘불법 탈퇴 중용’ 증거를 확보한 노동조합은 추가 사례 수집에 나섰다. 부당노동행위에 연루된 경영진과 보직자 한 명 한 명을 끝까지 추적하고 모두 개별 고발해, 법의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노동조합은 이와 함께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운영을 시작했다. 사내에서 자행되는 노조 불법 탈퇴 중용 등 모든 형태의 부당노동행위 신고 접수를 통해, 철저한 진상 조사와 엄정한 법적 대응 절차를 밟을 것이다.

3. 'MBC재건', 여러분의 동참을 환영합니다.

- 4월 대대적 조합원 확대의 달로

조합은 4월 한 달간 조합원 가입을 적극 독려하는 조직 확대 사업에 돌입한다. 어제(28일) 서울지부 대의원회는 ‘보직자 조합 자동 탈퇴’ 규정을 삭제하고 보직 국장과 부장들에게도 조합 가입의 문을 열었다. 조합의 기존 규약에 의해 조합에서 자동 탈퇴된 전·현직 보직관리자와 노무 담당자는 물론, 노동조합 탈퇴를 중용하는 사측의 명백한 위법행위로 스스로 조합을 떠난 사원들의 재가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조합은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해 ‘공정방송’을 실현하고, 노동자로서의 기본권익을 적극 옹호한다는 강령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대의에 동의하는 MBC 구성원은 누구라도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특히 2012년 파업이 끝난 이후 다양한 고용 형태로 입사한 경력사원들에게 적극적으로 조합의 문을 열 계획이다.

신규가입 조합원 수 올 들어 계속 증가

MBC 구성원들은 김재철 체제 이후 수많은 해고와 부당징계, 부당전보, 탈퇴 중용 등 사상 유례없는 탄압 속에서도, 30년을 이어온 자랑스러운 노동조합을 곳곳이 지켜냈다. 올해 들어 신규 가입 조합원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번 조합원 확대 사업을 통해 조합은 MBC 내의 명실상부한 절대 다수 노동조합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할 것이다. 나아가 ‘단체협약 복원’ 등 회사와의 협상에서 더욱 강력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공정방송 실현과 근로 복지 향상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합은 가입을 희망하는 사원들의 편의를 위해 개인 의사에 따라 가입 시기를 조정하거나, 온라인으로 가입하는 방식도 준비했다. 또한 사측의 각종 부당노동행위와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에 상대적 으로 쉽게 노출돼 있는 계약직, 업무직 사원들에 대한 ‘노무 상담’ 행사도 4월 중 개최할 방침이다.

□ 전국언론노조 MBC본부 부당노동행위 신고센터

① 카카오톡 옐로우 아이디

: ‘전국언론노조 MBC 본부’와 친구 맺은 뒤 1대1 채팅

② 전화 신고 : (02)789-3881, 1931~1932